

#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(안)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(안)

의 안	19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8 . . .  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제정이유

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 
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,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 
진료수가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진료비, 진료수가, 약가, 타법령에 의한 수가 및 기타수가에 관한 사  
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내지 제6조)
- 나.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진료비·수수료 감면,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
### 3. 제정조례(안) : 덧붙임

### 4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
##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료비 등)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3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적용 징수한다.

제4조(약가)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

제6조(기타 수가)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 각종 증명수수료는 【별표】에 따라 징수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(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)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.
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 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납부)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.

제10조(추징)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【별표】

##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

구 分	기 준	수수료	비 고
1. 일반진단서	1통당	500원	
2. 특별진단서	"	2,000원	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 진단용
3.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	"	5,000원	
4. 근로자건강진단서	"	500원	
5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	"	500원	
6. 성별 및 연령감정서	"	2,000원	
7. 사망진단서	"	500원	
8. (공무원)채용신체검사서	"	500원	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의료원에만 해당
9.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	"	600원	간염검사 포함(2,000원)
10.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사본	"	500원	
11.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	"	300원	
12. 각종증명서 1통 초과발급	"	100원	

## 관 계 법령(발췌)

### □ 지역보건법

제14조(수수료등)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,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9호
- 의 안 명 :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총무국 총무과

## 2. 제안이유

-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,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가,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3. 주요골자

- 가. 진료비, 진료수가, 약가, 타법령에 의한 수가 및 기타수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내지 제6조)
- 나.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진료비 · 수수료 감면,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,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가, 징수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

-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진료비, 진료수가 약가 타법령에 의한 수가 및 기타수가에 관한 상향을 규정하고, 안 제7조에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진료비 · 수수료 감면,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은 기구관련 개별조례가 통합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1998. 9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완기